

## 「Hana 1Q bank CMS<sup>Global</sup> 이용계약서」

1. 개정시행일: 2016. 10. 10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<b>제1조~제10조 (내용 생략)</b></p> <p><b>제11조 (면책)</b></p> <p>① “은행”은 다음의 각 호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“은행”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, “고객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단, “은행”은 자신의 재해복구계획과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 “고객”이 “본 계약”의 “서비스”를 제한적인 범위 또는 대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홍수, 악천후 등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2. 화재, 전쟁, 테러, 폭발, 사회소요사태, 산업분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3. 국내외 법령, 규제조치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4.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통신기기, 통신회선의 장애 등으로 장기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</li> </ol> <p>② “은행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, “고객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고객”이 계약을 위반하여 “서비스”를 이용하거나, “본 계약”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2. “은행”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</li> <li>3. “고객”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,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</li> <li>4. “고객”의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의 경우</li> <li>5. 다른 “연계은행”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, 정지, 해지로 인한 거래 불능의 경우</li> <li>6. “서비스” 이용 PC 등에 등록된 인터넷 서비스 정보, 계좌관련 정보 등이 상이하거나 수정되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7. “고객”의 이용자 PC등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</li> </ol> <p><b>제12조~제18조 (내용 생략)</b></p>	<p><b>제1조~제10조 (좌동)</b></p> <p><b>제11조 (면책)</b></p> <p>① “은행”은 다음의 각 호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“은행”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, “고객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단, “은행”은 자신의 재해복구계획과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 “고객”이 “본 계약”의 “서비스”를 제한적인 범위 또는 대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홍수, 악천후 등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2. 화재, 전쟁, 테러, 폭발, 사회소요사태, 산업분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3. 국내외 법령, 규제조치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4.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통신기기, 통신회선의 장애 등으로 장기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</li> </ol> <p>② “은행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, “고객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고객”이 계약을 위반하여 “서비스”를 이용하거나, “본 계약”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2. “은행”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</li> <li>3. “고객”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,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. 단, 이용자의 고의·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.</li> <li>4. “고객”의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의 경우</li> <li>5. 다른 “연계은행”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, 정지, 해지로 인한 거래 불능의 경우</li> <li>6. “서비스” 이용 PC 등에 등록된 인터넷 서비스 정보, 계좌관련 정보 등이 상이하거나 수정되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7. “고객”의 이용자 PC등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</li> </ol> <p><b>제12조~제18조 (좌동)</b></p>	<p>단서 조항 추가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